

## 깊이 보기

: 왜 소규모 사업장에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을 권하는가?

# 왜 소규모 사업장에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을 권하는가? (3)

1.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애로점
2. 소규모 사업장작업환경개선(WISE) 프로그램에 대하여
3.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 위험성평가 및 법정 작업환경측정의 비교
4. 향후 과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와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의 접목



**박정선**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석좌교수

## 3.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 위험성평가 및 법정 작업 환경측정의 비교

소규모 사업장에는 측정결과를 해석하고 개선에 연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없으므로 측정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제시하는 방법(예: 영국의 스트레스관리 표준)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관리감독자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나 노동자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쉬워 실질적인 개선에까지 이르기가 어렵다.

〈표 1〉 작업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위험성평가,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PAOT)의 비교

| 비교지점 | 법정 작업환경측정   | 위험성평가  | 참여형작업환경개선기법 (PAOT)   |
|------|---|--|--|
| 법적근거 | 강제 사항   | 권고 사항  | 없음   |
| 목적   |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인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 위함  |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 또는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함  |
| 대상   | 법에 정해진 작업환경측정대상(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분진)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있는 작업장   | 모든 사업장의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노동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  | 작업장의 안전, 건강, 효율, 쾌적 관련 요소들   |
| 주기   | 반기 1회 이상  | 연 1회 정기적 실시/ 변경사항 있을 때 수시 실시   | 사업장 형편에 따라 일상적으로 실시  |
| 담당   | 외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   | 관리감독자의 임무/ 해당 작업장 노동자 참여   | 노사가 함께 실시  |
| 차이점  |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며, 평가대상도 양적으로 측정가능한 요인에 한정되어 있고, 외부 전문가가 평가자이므로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부분은 문제가 있어도 드러나지 않아 개선이 어려움 | 작업환경 속의 화학적 인자 및 물리적 인자뿐 아니라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다루도록 되어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 개선에 까지 연결되어 있고, 노동자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다만 현재까지는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개선에까지 연결되는 능동적인 제도로 정착하지는 못함 |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다룬다거나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점은 위험성평가와 유사함. 다만 보다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요소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여 그에 맞추어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긍정적인 방식과 노동자들이 이 기법과 개선사례를 보고 배워 스스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왼쪽 두 방식과 큰 차이점임 |

 〈다음호에 계속〉